

「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10.22)

1. 심사경과

가. 2004. 10. 15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10. 15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45호)

다. 2004. 10. 22 :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이관우)

가. 제안이유

- 농업개발시설의 운영목적 중 현장 학습체험 장을 추가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명칭 변경
 -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
⇒사천시농업개발시설설치운영조례
- 운영목적 중 현장 학습체험 장 추가
- 인용조례 명 및 용어 정비
 - 지역농업개발센터 ⇒ 농업개발시설
 - 용어의 정의 ⇒ 정의
 - 사천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 ⇒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

다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: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, 제15조(조례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동 조례(안)은 조례의 명칭변경과 농업개발시설의 운영목적에 현장 학습 체험장을 추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

- 조례의 명칭을 「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」에서 「사천시농업개발시설설치운영조례」로 변경하고 제1조(목적)에 현장 학습 체험장 추가와 인용조례의 명칭변경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
- 입법절차 및 체계, 상위법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	답 변	
질의자	질 의 요 지	답변자	답 변 요 지
진삼성 위원	○ 지역농업개발센터와 농업개발시설의 차이점은?	농업진흥과장 이관우	○ 일반인은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혼동할 수 있음. 농업기술센터 안에 시설하우스, 각종 포장 등을 농업개발시설이라 함.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이의 혼동을 사전에 예방코자 명칭을 변경함.
최연조 위원	○ 현장 학습장을 추가하는데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?	농업진흥과장 이관우	○ 그동안 유치원생, 초등학교 학생 등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현장 방문하고 있으며, 이들에게 실제 풀 뽑기, 식·동물이름 외우기 등 현장에서 많은 실습을 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: 없음